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비정년계열 외국인전임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외국인 교원은 본교 계약에 의해 임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어 또는 전공 분야의 강의 및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자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3조(임용시기 및 기간) ① 외국인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제4조(자격기준) 외국인 교원의 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교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교육 및 연구 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자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 받은 자
3. 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정년계열 외국인 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한다.

②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 필요로 하는 학부(과)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외국인교원 활용계획서 1부.
2. 학과(전공) 또는 관련 부서 회의록(동의서) 1부.
3. 이력서 및 연구업적 목록 각 1부.
4. 학력증명서 각 1부.
5. 학위증 사본 1부.
6.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
8. 기타 임용에 관련된 서류

③ 외국인 교원은 임무에 적합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는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외국인교원은 본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허가 없이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임용계약) 외국인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계약) 재임용 계약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복무) 외국인 교원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복무하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8. 7. 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